

2025년도 한-헝가리 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

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 헝가리 간 국제협력을 통한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「2025년도 한-헝가리 공동연구사업」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연구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5년 5월 20일

〈주무부처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 관 유 상 임

〈전문기관〉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홍 원 화

1

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- 한국과 헝가리의 연구협력을 위한 국제공동연구와 연구교류 활동을 지원하여 양국 간 협력기반조성의 기회를 마련

□ 사업내용

- 사 업 명 : 한-헝가리 공동연구사업
- 공모방식 : 지원분야 내 자유공모
- 사업형태 : 양자 간 공동연구
 - 한국 연구자와 헝가리 연구자의 1:1 매칭을 통한 국제공동연구 수행

□ 지원분야

- 첨단 바이오 (생명, 의료 등)
- 친환경 · 에너지
- 디지털 전환

상세 지원분야

- **Support for preventive, curative and care systems to maintain healthy lives:**
 - health promotion and disease prevention,
 - improving quality of life in old age,
 - innovative diagnostic and curative interventions and therapies (drug discovery, immunology, development of medical devices and instruments)
- **Support for the green transition of the economy and the development of a circular economy:**
 - agricultural innovation and water management, effective protection against natural disasters and extreme weather conditions,
 - increasing energy efficiency, accelerating the transition to clean energy, and exploiting indigenous energy sources,
 - sustainable and smart mobility
- **Supporting the digital transition of the economy and society:**
 - artificial intelligence, quantum technologies,
 - smart grids, autonomous systems

□ 지원기간 및 규모

과제 수		총 5과제 내외	
과제당 연구비		과제당 연 100백만원 이내	
기간 및 연구비	총	36개월 (2025.10.1. ~ 2028.9.30.)	300백만원 이내
	1차년도	3개월 (2025.10.1. ~ 2025.12.31.)	25백만원 이내
	2차년도	12개월 (2026.1.1. ~ 2026.12.31.)	100백만원 이내
	3차년도	12개월 (2027.1.1. ~ 2027.12.31.)	100백만원 이내
	4차년도	9개월 (2028.1.1. ~ 2028.9.30.)	75백만원 이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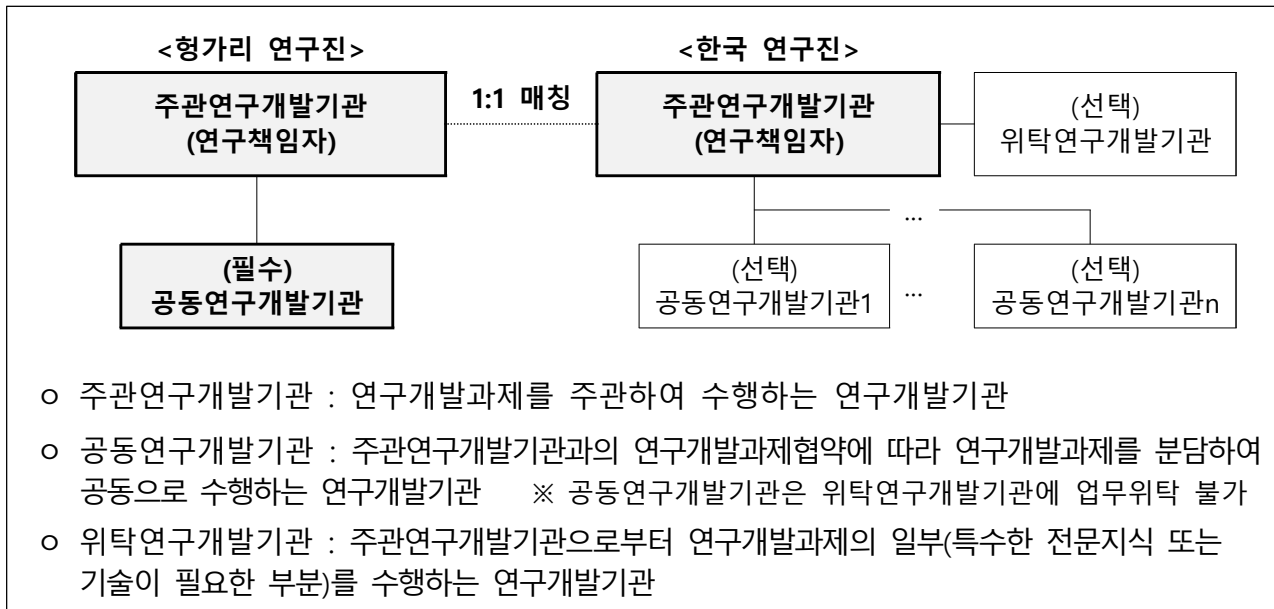
※ 분야별 지원과제 수 및 연구개시일은 상대국 협의 과정에 따라 변동 가능

※ 헝가리 측 연구개시일은 2026.1.1. 예정

※ 양국은 각자의 연구자를 지원하며, 헝가리 측은 과제당 총 200,000 EUR 내외 지원 예정
(헝가리 측 연구비 비목 등 세부사항은 NKFIH 문의 요망)

□ 과제구성

<연구개발기관 수행 체계>



- 헝가리 연구진은 학(또는 연)+ 산 형태로 과제 구성
 - 한국 연구진은 학 또는 연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
 - 기업의 경우, 참여연구원 또는 위탁연구기관으로만 참여 가능
- ※ (참고) 공동연구과제와 위탁연구과제의 주요 차이점

구분	공동연구과제	위탁연구과제
성과 소유	가능	불가
연구개발과제 수행제한(3책5공) 적용	적용	미적용
연구개발비 상한	-	직접비*의 40% * 위탁연구비, 국제공동연구비, 연구개발부담비 제외

□ 지원내용

- 연구자의 국제공동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혁신법 기준에 따라 지원
 - 직접비(인건비, 연구시설·장비비, 재료비, 연구활동비 등) 및 간접비
- 직접비는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에 따라 계상
 - 양국은 각각 1:1로 연구비를 지원하므로 국제공동연구개발비 편성불가
 - 상대국 연구자 체재비 지원 등은 연구자 간 합의에 따라 교차지원 가능
- 간접비는 기관별 간접비 고시율을 따름

□ 신청자격

○ 주관연구기관의 자격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

※ 단, 기업 소속 연구자는 연구책임자로서 참여가 제한되고, 참여연구자 또는 위탁연구기관으로는 참여 가능

○ 연구책임자의 자격

- 상기 신청 가능한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6조(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) 및 제7조(연구자의 책임과 역할)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

※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(정년)퇴직,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,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

※ 헝가리 측 연구책임자의 자격 등 세부사항은 NKFIH 문의 요망

□ 신청제한

○ 신청마감일 기준, 본 사업에는 1인 1과제에 한하여 신청 및 참여 가능

○ 신청마감일 전까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등 제규정에 의거 참여 제한을 받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

- 단,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

- 신청 후 신규과제 선정 중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, 반드시 전문기관(한국연구재단)에 사실을 알려야 하며 동 과제는 선정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

※ 관련 :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32조 및 「동법 시행령」 제59조 제1항

※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한이 종료되어야 하므로 연구과제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참여제한 여부확인 요망(<http://www.ntis.go.kr> 로그인 후 확인 가능)

○ 차별성 검토(유사과제 신청 금지)

-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 신청을 사양하고,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(타부처 포함)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

※ NTIS 및 IRIS를 통해 기 수행과제와 차별성을 확인 후, 해당 분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차별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탈락 처리

※ 차별성검토 방법 : www.ntis.go.kr → 과제참여·관리 → 차별성검토

○ 본 사업은 ‘연구과제 수 상한제(3책 5공)’에 해당하는 사업임

-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최대 5개로 제한하며,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로 제한
- 단, 해당 과제의 기술적, 정책적 중요성, 연구개발 추진의 시급성 등에 대한 전문적 판단에 따라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, 예외 인정 절차는 과제 선정평가 시 전문가 심의를 통해 추진함

▶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64조(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)

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.<개정 2024. 2. 6.>

1.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
2. 사전 조사, 기획·평가연구 또는 시험·검사·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
3.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
4.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, 제5조제1호·제2호의 사업,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

4의2.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

5.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

6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

가.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

나.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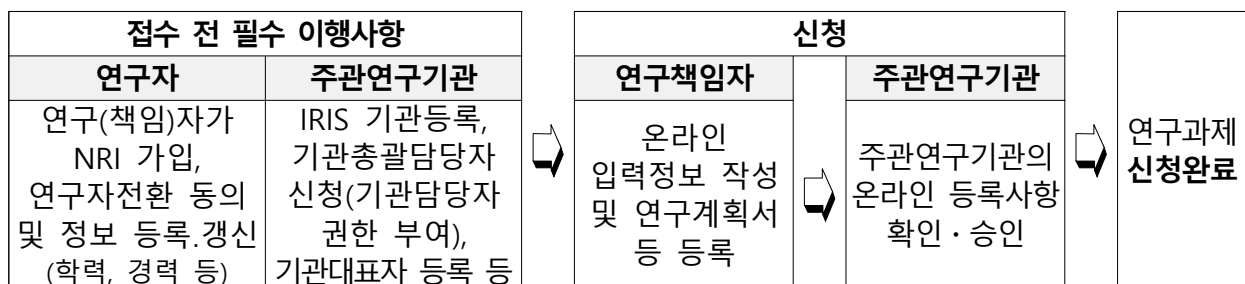
7.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

3

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- 2025년도 한-헝가리 공동연구사업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(KISTEP)이 운영하는 IRIS*(<https://www.iris.go.kr>)를 통해 과제신청,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
* IRIS(Integrated R&D Information System):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·승인



※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

▶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세부내용은 [별첨]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(KISTEP IRIS운영단), IRIS 회원가입(연구자 전환)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

- ① (연구자) ① IRIS 회원가입, ② IRIS 내 NRI(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)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, ③ NRI 내 학력/경력*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** 정보 등록 필수

* 경력정보에서 근무(소속)부서 등록 필수

**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, 수행 중/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

- ※ ① 및 ② :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(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),
③ : 연구책임자만 필수

- ② (주관연구기관) IRIS 기관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(기관담당자 권한부여), 기관대표자 등록 등

※ 기관대표자 및 기관(총괄)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가 필수이며,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,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

▶ IRIS 문의처: IRIS 콜센터 1877-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

- 과제 접수 매뉴얼 참조 :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<http://www.iris.go.kr>)
→ R&D 업무포털 클릭 및 접속 → R&D 고객센터 → IRIS 사용 매뉴얼 → [IRIS R&D 통합업무포털-연구자용]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

※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

-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, 화면 우측상단의 ‘최종확인’ 완료 이후 ‘제출’이 가능하고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

※ 연구개발계획서 수정은 연구책임자 접수마감일까지만 가능함

□ 신청기간

구분	내용
연구책임자 신청 및 주관연구기관 검토·승인기간	2025.5.20.(화) ~ 2025.6.30.(월) 18:00까지
신청 절차	연구자 접수 ▷ 주관연구기관 ▷ 승인 신청 완료

※ **6.30.(월) 18시까지 반드시 연구자 접수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이 완료**되어야 함

※ 헝가리 측 접수 마감일 : 2025.6.30.(월) 17:00(현지시간 기준)

(접수 방법 등 세부 내용은 NKFIH 측 공고 참조)

- 연구책임자 : [연구책임자 신청기간] 내에 계획서 등록(신청완료) 및 기관 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주관연구기관 :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계획서에 대해 검토 및 승인 완료
- 기한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, 계획서 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(유효성검증 오류 등) 연구자 신청마감 최소 5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

□ 제출서류

양식 번호	필수 제출서류
[양식1]	국문 연구개발계획서
[양식2]	영문 연구개발계획서(양국 공통양식)
[양식3]	신규과제 기타증빙 양식 -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-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·활용 동의서 -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
[양식4]	연구개시일 기준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

□ 유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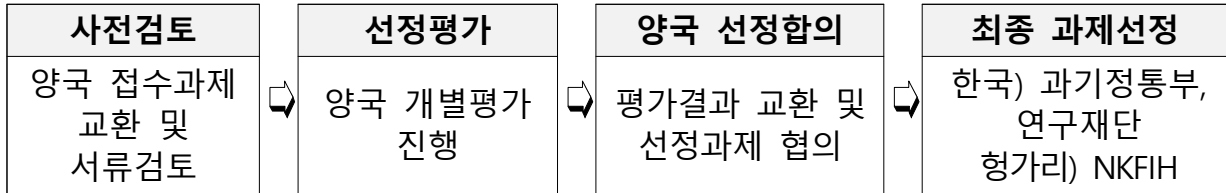
- 영문 계획서는 양국 연구진 간 협의를 통해 해당 연구자의 연구주안점, 연구목표 등 범위를 명확히 해야함
- 한국 측 예산은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에 의거하여 편성
- 응모자가 없거나 신규 지원과제 수 이하로 접수된 경우 재공고 가능

- 사업요건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- 제출서류 미비,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,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
-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,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(선정 취소 등) 가능
-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
 - ※ 「과학기술기본법」,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, 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」 등
-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,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
-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신청자 및 수행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차/최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한 경우, 해당 계획서 및 보고서에 생성형 AI 도구 사용 내역을 기술(권장)
 - ※ 「생성형 인공지능(AI) 도구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」(24.3, 한국연구재단) 참조
- 선정된 연구책임자는 국제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IP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제계약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함
 - ※ 「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」의 양식을 참고하여 양국 연구책임자 간 협의하여 작성하되, 자세한 사항은 선정자 대상으로 협약 시 별도 안내
- 선정된 연구책임자는 외국정부·기관·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협약 시 제출하여야 함
 - 동일 기관으로부터 연간 5,000불 이상의 금전·유가증권·교통·숙박 등을 제공받은 경우만 해당하며, 신청·선정·지정·협약·계약 등을 포함하여 단순 문의·제안·논의 및 종료사항은 미포함

4

평가절차 및 일정

□ 평가절차



- 사전검토 : 전문기관에서 제출서류 구비요건, 신청자격 적합여부 등 검토
 - 선정평가 : 기술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 연구책임자의 신청서 검토 및 토의를 통해 평가항목당 점수 부여
 - 양국 선정합의 : 양국 간 평가결과 교환 및 최종 선정과제 협의
 - 최종선정 : 전문기관이 평가결과 보고 후, 과기부 최종확정
- ※ 접수규모와 세부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방법 및 절차 변경 가능

□ 평가항목

평가항목(안)
• 연구목표, 연구내용 및 연구계획의 창의성, 우수성과 충실성
•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, 전문성
• 국제공동연구의 필요성과 구체성, 수행계획의 충실성
• 연구결과의 파급효과, 양국 간 협력관계의 심화·확대 가능성 등
※ 향후 유럽 프로젝트(Horizon Europe 등)로의 심화·확대 가능성이 있는 경우 평가 시 우대 가능하며, 계획서에 구체적으로 기재 요망

※ 상기 평가항목은 평가 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

□ 향후일정

- 2025.6.30. 접수마감
- 2025.7월 선정평가
- 2025.8~9월 양국 간 평가결과 교환 및 최종과제 협의
- 2025.9월 선정과제 공고 및 협약체결
- 2025.10월 연구개시

※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
□ 문의 절차

“문의 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,
반드시 공고문 및 FAQ 확인 후 연구 수행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”



5 기타사항

□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

- 공고내용이 수정되는 경우 아래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수정사항이 게시되므로 지속 확인 필수 (수정사항을 개별 안내하지 않음)
- 한국연구재단 (<https://www.nrf.re.kr>) → 사업안내 → 사업공고 → 사업공지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(<https://www.iris.go.kr>) → 정부부처 : 과학기술 정보통신부, 전문기관: 한국연구재단 선택 → 사업공고

□ 관련 법령, 규칙, 매뉴얼 등 조회 방법

-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(<http://gaia.go.kr>) 접속
- 법, 규정, 규칙: 「국가R&D연구비관련 법·규정」 → ‘공통 법·규정’ → ‘과학기술정보통신부’, ‘과학기술정보통신부(한국연구재단)’ 관련 확인
- 연구·연구비 관리 매뉴얼: 「연구·연구비 관리 매뉴얼」 클릭



□ 논문 사사표기 안내

- 연구성과의 학술지 논문 게재 시, 해당 논문에 사사를 표기함

- ▶ **국문표기** : 이 성과는 정부(과학기술정보통신부)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(IRIS 과제번호).
- ▶ **영문표기** :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(NRF)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(MSIT) (IRIS 과제번호).
 - ※ MSIT : Ministry of Science and ICT
 - ※ 성과는 논문, 특허 등 실제 성과 명칭으로 대체 사용 가능

□ 문의처

- (온라인 입력 및 시스템 문의)
 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: 1877-2041
- (한국 측 문의)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본부 구주아프리카협력팀
 - (사업 관련 문의) 양세형 연구원 : 02-3460-5724 / ysh9167@nrf.re.kr
 - (접수 등 IRIS 문의) 이예란 연구원 : 02-3460-5728 / lyr8726@nrf.re.kr
- (헝가리 측 문의) National Research, Development and Innovation Office(NKFIH)
 - Kitti Teveli, EU and international officer of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Affairs : +36 30 813 5971 / bilateral@nkfih.gov.hu